

2026년 지식재산 허브도시 거점 기능화사업

특허기술 가치평가 지원사업 모집공고

대전소재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기술금융·투자유치·기술이전 등 사업화 의사결정의 근거 활용 및 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과 성장기반을 강화하고자 「특허기술 가치평가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.

2026년 3월 12일

대전테크노파크원장

1. 지원개요

- ☐ 사업목적: 특허기술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해 기술금융·투자유치·기술이전 등 사업화에 활용하도록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자금조달 및 기업가치 제고 등을 촉진
- ☐ 지원내용: 활용유형별 특허기술 가치 산정 및 평가보고서 발급 지원
 - (비용지원) 가치평가 비용 최대 13,500천원 이내/1社 ※공급가액에서 기업부담금 제외 금액, 부가세(VAT)는 지원하지 않음
 - (수행기관) 가치평가 수행기관은 「발명 등의 평가기관(지재처 지정), 기술평가기관(산업부 지정)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·등록된 기관
※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
- ☐ 지원대상: 국내외 등록된 특허의 권리자, 그 승계인 또는 전용실시권자로서 대전소재*의 중소기업(법인사업자)
※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본점이 대전시에 소재한 기업
- ☐ 신청조건
 - (대상기술 범위) 국내·외 등록특허에 한하여 가치평가 지원 가능
※출원 중인 특허는 지원 제외

- (수행기관 지정) 신청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가능하며, 「발명 등의 평가기관(지재처 지정), 기술평가기관(산업부 지정)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·등록된 기관에 한함
- ※국가지식재산 거래플랫폼(ipmarket.or.kr/ko/uses/valuation/intro): 발명 등의 평가기관 현황
- ※스마트 테크브릿지(tb.kibo.or.kr/ktbs/tech/tectrsinu/tecTrslnuList.do): 기술평가기관 찾기
- (기업부담금) 최근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기업분담률 적용(현금)
- (협약기간 준수) 협약기간 내 가치평가 수행 완료 및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기업

□ 기업부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

- 선정기업은 최근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기업분담률(A)을 차등 적용하며, 기업부담금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함.(소요비용의 공급가액 기준 최소 10% 이상)

※기업부담금 = [소요비용의 공급가액×기업분담률(A)] + 부가세

구분	최근년도* 매출액 규모			
	30억원 이하	50억원 이하	100억원 이하	100억원 초과
기업부담률(A)	10%	15%	20%	25%

※최근년도 기준: 원칙적으로 2025년 재무제표를 최근년도 자료로 적용함. 다만,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 미종료 등으로 2025년 재무제표 제출이 곤란한 기업은 2024년 재무제표를 최근년도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

2. 신청 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

- (모집기간) 2026. 3. 12(목) ~ 4. 3(금) / 23일간
- (접수기간) 2026. 3. 12(목) ~ 4. 3(금) 18:00까지 (온라인 자동마감)

□ 신청(접수)방법

- (공 고 명) 특허기술 가치평가 지원사업 모집공고
- 대전기업정보포털(<http://www.dips.or.kr>)을 통한 온라인 접수

① 대전기업정보포털(DIPS) 기업회원가입 → ② [사업공고] 메뉴 클릭 → ③진행상태가 [접수중]으로 되어있는 동 사업의 공고명 선택 후 → 하단에 온라인 [신청]버튼 클릭하여 정보 입력 → ④ 제출서류 첨부 후 등록완료 → ⑤ 접수확인을 위한 '접수증' 출력 후 보관

※ 제출서류는 가능한 한 1개 파일로 압축(zip)하여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.
(도장 또는 서명 날인본은 PDF파일로 제출 필수)

□ 제출서류 ※신청서(양식) 첫 페이지 참조

구분	제출서류	비고
1	신청서 및 계획서 [서식1]	온라인(DIPS) 등록
2	지원기업 협약서 [서식2]	
3	기업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[서식3]	
4	수행기관 지정확인서 [서식4] - (수행기관) 사업자등록증, 인정서 등 자격증빙, 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, 견적서	
5	사업자등록증	
6	최근 2년('24~'25) 결산 대표제표	
7	4대 보험 가입증명원('26) ※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온라인(www.nps.or.kr) 발급 가능	
8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※ 국세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에서 발급가능 ※ 지방세: 민원24(minwon.go.kr) 에서 발급가능	

3. 신청 시 유의사항 (필독)

□ 유의사항

-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선정결과는 기업에 개별 통보
- 부가가치세(VAT)는 지원하지 않으며 기업이 부담. 또한 총 사업비(지원금+기업부담금)는 VAT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
- 신청서 접수 후 전담기관(대전테크노파크)은 필요 시 면담, 현장 실태조사 또는 추가 서면자료(보완자료)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- 지원규모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할 수 있음

□ 지원제한 및 지원금 환수(선정취소) 대상

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, 선정 이후라도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

1) 재무·경영상태 제한

- 사업개시일 3년 이상 기업 중,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1,000%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% 이하인 기업
- 최근 회계연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

2) 기업 상태 및 자격 제한

- 휴·폐업 중인 기업
 -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인 경우
 - 선정 이후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 이외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
 - 동일 내용으로 타 기관(지자체 포함) 또는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았거나, 기존 지원과제와 유사·중복이 확인되는 경우
 - 금융기관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·지방세 체납 기업
- ※단,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(프리·개인워크아웃), 법원 개인회생(변제계획 인가), 파산면책, 기업회생 인가, 재창업자금 지원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

3) 기타

- 그 외의 사항은 ‘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’ 및 동 요령 [별표1] 신청자격 사전검토 기준을 준용
- 제출서류 기재 내용이 허위이거나 중요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, 향후 대전테크노파크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- 지원금 지급 이후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환수 조치할 수 있음
- 본 사업은 ‘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’을 준용하여 운영

4. 지원절차

구분	주요내용	일정
공고/접수	○ 사업 공고 및 접수(온라인) ○ 자격요건 검토 등 서류평가	공고 : 3. 12. ~ 4. 3. 접수 : 3. 12. ~ 4. 3.
선정평가	○ 선정평가위원회(대면) *수행기관 배석 가능	접수완료 후 14일 이내
협약체결	○ 과제별 사업계획 조정(예산, 일정 등) ○ 협약체결(대전TP↔기업↔수행기관) ○ 협약기간: 협약일부턴~'26. 8. 31.	5월초
사업추진	○ 특허기술 가치평가 실시	협약기간 내
최종평가	○ 최종평가위원회(대면) *수행기관 발표 원칙	9월중
지원금 지급	○ 사업비 청구에 의거, 지급(대전TP→수행기관)	신청 후 1개월 이내

※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조정되어 진행될 수 있음.

□ 문의처

담당기관(부서)	문의내용	연락처
신성장육성실 남궁찬 책임	사업 문의	042-930-4813
운영지원실 정보화팀	온라인 접수 오류 등 전산 문의	042-251-2872

※(주 소)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, IT전용벤처타운 105호(신성장육성실)

붙임: 신청서(양식) 1부. 끝.